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-
1. 행정예고 내용: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공간 내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
 2. 설치목적 : 시설안전,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
 3. 관련 근거
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6. 7. 6. ~ 7. 25. (20일간)
 5. 공고방법 :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

(<https://www.moel.go.kr/local/seoul/index.do>)

6. 설치장소

기관명	설치 장소	대수
서울지방고용노동청 (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)	1층 청년ON라운지 내부	4대
	2층 직업능력개발과 심층면담실	1대
	4층 취업지원총괄과 구직자도약패키지 상담실	3대
계		8대

7. 의견서 제출

- 제출기간 : 2026. 7. 6. ~ 2026. 7. 25.
- 제출내용 :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제출방법: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
※ (주소)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, 5층, (FAX) 02-6915-4010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
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

행정예고 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

의견 제출자 성 명
(개인/단체)

전화번호

주 소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